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유재산(토지)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우편물 반송)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 12.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제 목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 기간 : 2014.12.11. ~ 2014.12.24.(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참조
- 문의 사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재무과(02-2670-3188)

위 공고기간까지 영등포구청 재무과에서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2014년 12월 24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과된 변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유재산(토지) 변상금 독촉 고지서 송달내역 1부